

201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

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각종 농림사업과 관련,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사업을 알리고자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. 본 내용은 지면관계상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는 농가는 농식품부나 시군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.

I. 사육기반확충

0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

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조사료 생산·유통 경영체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한우·낙농조합 및 지역 농·축협, 한우회·낙우회 등
- 재배농가 : 사료작물 재배 희망농가

〈재배농가 유형〉

- 지역 농·축협 등 경영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
- 파종,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·축·낙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시범포로 운영하는 지역의 농가
-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,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농가
-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농가
- 경종과 축산을 함께 하는 복합영농 농가(겸업농가)

- 축산농가 :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축산업 등록농가, 섬유질가공사료업체, 지역 농·축·낙협, 영농법인, 한우회, 낙우회 등

2. 지원대상

- 동·하계 사료작물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용(벚짚제외), 유통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운송비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사일리지 제조비 :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(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)
- 유통비 : 생산된 사일리지를 타 시·도로 판매할 경우 장거리 운송비 지원

4. 지원형태

- 사일리지 제조비 : 축발기금 보조 40%, 지방비 50%, 자부담 10%
 - 자부담분은 농림수산사업 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자부담 우선집행 제외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
- 유통비 : 축발기금 보조 50%, 자부담 50%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사일리지 제조비 : (동계 사료작물) 60천원/톤, (하계 사료작물) 30천원/톤
 - 시·군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시 조사료 생산·유통 경영체로 하여금 중량을 계근토록 하고,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급.
- 유통비 : 실 운송비의 50%이내에서 지원하며, 지원 상한액은 30천원/톤 임
 - 유통되는 조사료는 <별표 1>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 부착 제품은 장거리 유통비 보조대상에서 제외

②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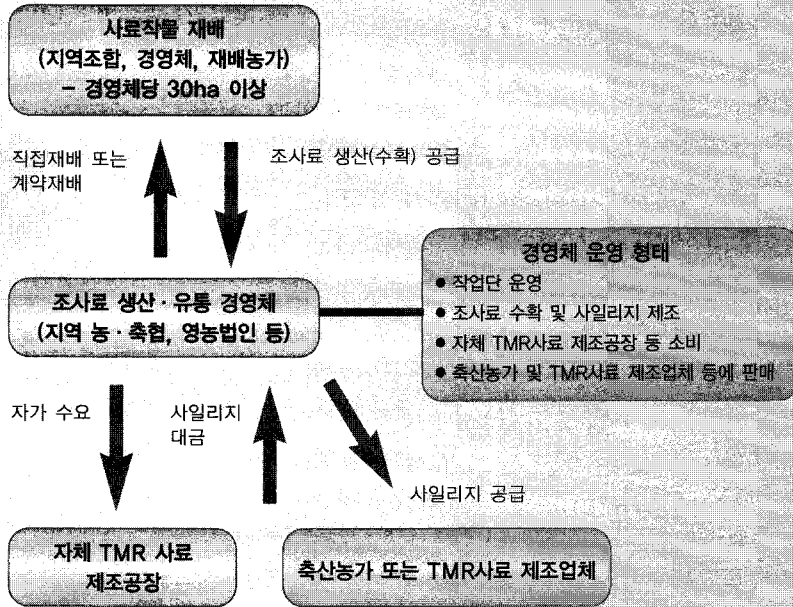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개별농가 : 한우·젓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축산업등록농가, 15ha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(조사료 사일리지 생산 시에 한함)
- 영농조합법인, 농업법인회사 :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농·축·낙협 :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·축협, 한우·낙농조합

2. 지원대상

- 조사료 생산·유통 경영체 :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
 - 기계·장비 보조지원 대상에서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
- 개별농가 :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기계·장비, 시설 등
 -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
 - 사일로유형 : 철근콘크리트 트랜치, FRP 사일로 등
 - 사일로용량(1기당) : 50톤(78^m)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

조사료 생산·유통체계 및 운영방법 예시



경영체의 사료작물 사일리지 생산·공급계약 체결

-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경영체와 생산 및 단가계약 체결
- 경영체는 보리·호맥 등 사료작물 따라 재배농가와 계약된 가격을 축산농가에게 알려서 곤포사 일리지 공급계약 체결
 - 경영체는 재배농가 소재 시·군에서 선정(지방비 확보)
 - 공급가격은 경종·축산농가, 경영체간 품질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
 - 재배농가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조사료를 생산하여야 하고,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부패 등 제품이 변질되어 사료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가격결정 및 인수 제외
 - 축산농가 소재 해당 시·군에 재배농가 및 경영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
-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대금을 받아 재배농가에게 지급

경영체 운영방법

-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·공급 계약 추진
- 경영체는 사료작물을 예취·곤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
 -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·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일체 또는 부분 위탁 가능
 - 자체 보유장비가 없는 경우 기계·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하고, 시·군 농업기술센터는 보유한 장비를 경영체에 우선 임대
- ※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

-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
- 기타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기계·장비 등
 - 동력원 : 트랙터, 경운기 등
 - 부속작업기 : 경운·쇄토기, 파종기, 비료살포기, 농약살포기, 퇴비살포기, 예취기 등
 - 처리장비 : 수확기, 집초기, 절단기 등
 - 운반장비 : 로다, 트레일러 등
 - 이용장비 :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
 - 농가용 조사료 배합기 등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·장비 구입비

4. 지원형태

- 조사료 생산·유통 경영체
 - 축발기금 보조 20%, 지방비 30%, 용자, 30%, 자부담 20%
- 개별농가 : 용자 80%(연리 3%, 2년 거치 3년 상환), 자부담 20%
 - * 영농조합법인 및 농·축협에서 용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개별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보조지원 : 사업단가는 30ha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(150백만원)를 산정한 것이며, 재배면적이 15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* 예시)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(100백만원)하여 지원금 산정
- 용자지원 : 기 용자지원분(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)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
 - 개별농가(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) : 5억원 이내
 -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%이내,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% 이내

③ 밭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축산업등록농가, 한우회·낙우회 등 협업체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한우·낙농조합 및 지역 농·축협

2. 지원대상

-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등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, 비닐랩 사일리지 제조시 비닐 구입비 지원
 - 처리규격 : 사일리지 1롤(500kg) 당 4겹 기준(추가비용 자부담)

4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축발기금 보조 30%, 자부담 70%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·공급 가능
 - 단,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
 - ※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요령(준비사항, 공급단가 계약체결, 기술지도 등)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, 시·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

④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“②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”과 동일함

2. 지원대상

- 초지조성 :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,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- 기반시설 : 소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〈초지조성〉

- 초지조성(경운·불경운·임간초지)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·자재대·측량수수료 등 지원
 -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“초지조성단비”를 기준으로 하고,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

- 초지조성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·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,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 외 반출 제한(다만, 초지법에 의거 반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)
-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·중급초지를 중·상급 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

〈기반시설〉

- 용수개발, 전기시설, 진입도로·목장내 도로 개설
 - 용수개발 :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,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
 - 전기시설 : 건조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(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)
 - 진입로 개설 : 초지의 진입도로,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, 보수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
- 초지·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
 -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·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- 지원기준 : 총 토지면적이 2ha 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.
 - 시장·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
- 초지용 울타리 설치
 -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
 - 지원기준 : 3ha당 1km 설치하고, 2ha 이상 초지조성시 지원
 - 대상시설
 -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
 - 철재앵글, 콘크리트,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, 철선 등의 시설
 - 수조 및 저수탱크

4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초지조성 : 축발기금 보조 50%, 축발기금 융자 50%
- 기반시설 : 축발기금 융자 80%, 자부담 20%
- ※ 융자조건 : 연리 3%, 3년 거치 7년 상환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융자금 지원기준은 “②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”과 동일함
-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,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

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고자 하는 농가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지역농·축·낙협,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종농가

2. 지원대상

- 옥수수, 청보리, 호밀, 귀리(연맥), 유채, 수단그라스, 이탈리아라이그라스, 총채벼 등 사료작물·목초종자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

4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축발기금 보조 30%, 자부담 70%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청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한함
- 종자구입비는 농가에서 자가 생산한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, 국내 육성 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종자에 한하여 지역농·축협(농협중앙회의 계통 구매분에 한함) 및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(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)을 지원
-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·군, 지역조합,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·확인
- 경관보전직불제에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종자공급 절차

종자신청

- 사업대상자가 시·군,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

종자공급

- 국립종자원,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공급

종자대 지급

- 농가자담분 :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농·축협조합 등에 납부
- 보조분 : 시장·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

○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

- 자담분 :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및 낙농육우협회에 납부
- 보조분 :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 (인수증 또는 현지확인)하고, 농협중앙회(도지회)에 촉발기금 지급요청
-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

02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

1. 사업대상자

- 개별시설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축산계열사업주체(소·돼지·닭), 농업법인, 지역 농·축협
- 공동자원화시설
 - 퇴·액비화 : 농업법인(영농법인, 농업회사법인), 지역 농·축협, 민간기업 (민간퇴비장, 사료업체, 축산계열사업자,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)
 - 에너지화 : 농업법인, 지역 농·축협, 민간기업(상법상 법인)
- 정착촌구조개선 :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(영농조합법인 등), 축산농가, 한빛복지협회, 지방자치단체
- 액비저장조시설 : 전문유통주체, 축산농가
 - * 전문유통주체 : 액비 수거·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 재농업법인, 지역 농·축협, 민간기업(상법상 법인), 경종농가 작목반, 조사료 생산·유통 경영체]
- 액비유통센터 : 전문유통주체
 - *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,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
- 액비살포비 : 전문유통주체
- 액비성분분석기 : 시·군 농업기술센터,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
- 액비부속도판정기 : 시·군 농업기술센터,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

2. 지원 자격 및 요건

- 개별시설
 -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, 축산단지, 축산계열사업주체(소·돼지·닭), 농업법인, 지역 농·축협
 - * 신고규모 미만 소규모 농가 :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지원
 - * 공동퇴비장 : 가축 분뇨만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있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, 퇴비 생산업체(영농조합법인)

- 공동자원화시설
 - 퇴·액비화 :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·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·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. 단, 중규모(30톤 내외)의 분산형 공동자원화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 시·군내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1개 법인으로 통일
 - 에너지화 :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·군 중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(70% 이상)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·이용 및 퇴·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
- 정착촌구조개선
 - 전국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·법인체 등
- 액비저장조시설
 - 전문유통주체 : 시장·군수가 구성·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,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
 - 축산농가 : 액비화시설을 갖추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서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,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(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 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)
- 액비유통센터
 - 액비살포 농경지 등을 200ha 이상 확보하고, 경종·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
 - 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고자하거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살포하고자 하는 조직에 지원
- 액비살포비
 - 시장·군수가 구성·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, 시비처방서 및 부속판정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
- 액비성분분석기
 - 액비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·군 농업기술센터,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
- 액비부속도판정기
 - 액비부속도판정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·군 농업기술센터,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

〈액비살포, 시비처방 및 부속판정 관련 기본방향〉

-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고자 하는 자(전문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농가)는 연간 액비생산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제출
 - 동 계획에는 액비생산량, 성분분석결과, 농경지 확보현황, 계절별 재배작물,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,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
-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·유통·살포하고자 하는 전문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시비처방 및 부속판정을 받아야 함
 - 전문유통주체가 개별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단위로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(단, 농가별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직접 액비를 생산하는 경우 예외)
- 액비살포비는 시비처방을 받고 부속도 판정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(다만, 부속도 판정기준을 2012년부터 적용)

○공통 적용사항

- 영농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'11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따라 [별표4]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(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,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,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)
- 단,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'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등 시급성을 감안 '11년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 6개월 적용
- 「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'11년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

3.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

○개별시설 : 가축분뇨처리 시설·장비 구입비

- 퇴·액비화시설 : 퇴비화시설(건조식·통풍식·교반식 등), 액비화시설, 퇴비사, 건조장,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, 액비화 전처리시설,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
 - ※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
- 에너지화시설(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, 고체연료 등 에너지 생산·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)
- 정화방류시설 :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
- 공동퇴비장 : 교반기 등 퇴비화 장비, 후숙·제품보관 창고
- 부대기계·장비 : 왕겨분쇄기·왕겨팽연화장비, 분뇨운반탱크(암롤박스), 축분발효기계·장비, 축분이송스크류, 고액분리기, 퇴비·액비살포장비(단, 트랙터,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), 약취제거장비, 정화방류

수 탈색장치, 바큇카, 암롤카, 축분·액비운반차량, 스키드로더, 축분퇴비포장기

* 왕겨분쇄기·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,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

※ 개별농가 지원제의 시설·장비 : 바큇카, 암롤카, 축분·액비운반차량, 스키드로더, 축분퇴비포장기, 공동퇴비장,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
 * 스키드로더 구입기준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. 단,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,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
 *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

- 공동자원화시설
 - 퇴·액비화 : 가축분뇨 퇴비·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·장비
 - 에너지화 :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·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·장비
- 정착촌구조개선 :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
- 액비저장조시설 :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(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) 및 폭기시설(펌프식 교반시설 등)의 구입비
 - 고정식 액비저장조(200톤 이상 등) 여러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(1단계 → 2단계 → 3단계 등)하도록 권장
 - 대규모(200톤 이상)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·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(다만, 지방비율 시·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)
 - 소규모(10톤 내외 규모)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설 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(예 :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)
- 액비유통센터 : 바큇카, 액비살포차량(트랙터 포함), 액비살포기,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·운반·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
- 액비살포비 : 시비처방서 및 부속도판정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(부속판정서 발급은 '12년부터 전면 시행)
- 액비성분분석기 :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
- 액비부속도판정기 : 액비부속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

4. 지원형태(조건) 및 사업의무량

- 재원 :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(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)
- 지원비율(%)

내역사업명	국비보조	지방비	국비용자	자부담	융자조건
개별시설	30	20	50	-	10년(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, 연 3%(민간기업 등 4%)
• 공동자원화시설					
- 퇴·액비화	50	30	20		
- 에너지화	30	30	20	20	
• 정착촌구조개선	70	30	-	-	
• 액비저장조시설	30	50	-	20	
• 액비유통센터	30	50	-	20	
• 액비살포비	50	50	-	-	
• 액비성분분석기	50	50	-	-	
• 액비부속도판정기	50	50	-	-	
• 자원화조직관리평가	100	-	-	-	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사업비 산정기준

(단위 : 천원/㎡)

- 개별시설,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㎡당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·적용

축종	한·육우	젖소
단가	30	35

- ※ ① 축사면적은 「건축법」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(관리사, 창고면적 제외)
- ② 젖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음
-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㎡당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
-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
- ⑤ 2005.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%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·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(창고형 건물은 제외)
 - 단,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시·군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
- ⑥ 한센인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·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
- ⑦ 무창돈사(또는 무창계사)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%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

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

③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·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(축사 m² 단위 면적당 사업비 기준) 초과시 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

○ 사업비 지원 한도액(개소당 기준)

(단위 : 백만원/개소)

구분	한 우	절 소
• 개별시설	개발능가	200
	법인체 등	800
* 공동퇴비장 :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/개소		
• 공동자원화시설		
- 액비화시설	3,000(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, 액비화 70%이상 처리)	
- 퇴비화시설	4,500(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, 퇴비화 70%이상 처리)	
- 에너지화시설	7,000(사업비 단가는 1일 처리량 기준, 톤당 7천만원 이내 적용)	
• 정착촌구조개선	개별시설에 준함	
• 액비저장조설치	17(200톤 규모기준, 폭기·교반 시설 포함)	
• 액비유통센터	200(최초 지원시)	
• 액비살포비	200천원/ha(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(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))	
• 액비성분분석기	24	
• 액비부속도판정기	30	

- ※ ① 사업비에 설계비·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
-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
-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(퇴·액비화 70톤이상, 에너지화 50톤 이상)을 제시하되,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, 검사실, 액비성분분석기·부속도판정기,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
 - 단, 악취방지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, 액비화시설의 경우 농경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액비(원수 포함)를 4개월 내외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
 - 퇴·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0% 이내에서 사용
-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(폭기·교반 시설 포함)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, 규격 등에 따라 조

정될 수 있으며,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

*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·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

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,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

⑥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.

○ 부대 기계·장비의 지원 한도액

- 가축분뇨 퇴·액비처리 장비 : 10백만원 이내(다만,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)

- 정화방류수탈색장치 : 30백만원 이내

- 가축분뇨 운반·살포용 차량 : 80백만원

-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: 30백만원

※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·장비의 가격은 (사)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(책자는 별도 제공)

II. 생산 및 유통개선

01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

①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

1. 사업대상자

① 전업농가

*전업농 기준 : 육우 50두 이상, 낙농(젖소) 50두 이상

② 한센인 정착촌 :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

〈우선지원대상 농가〉

·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중 5년 이상 축산을 지속하고자 하는 한센인

· 구제역 방역에 협조한 농가

- 구제역 발생농가 중 신속한 매몰을 위한 개인 부지사용 제공 농가

- 신속한 구제역 방역차단을 위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 농가

※ 살처분 농가 중 살처분 명령 후 즉시 동의한 농가를 우선 부여

· 기타 아래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액의 50% 이상 지원

- 젖소 : 육종농가 및 유우군 능력검정 참여 농가

(제 재 수 단)

-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
- 해양배출 특별관리 31개 시·군 중 해양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감축목표 달성시까지 지원 유보
 - 감축목표 달성시 유보액에서 우선 지원 조치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'06.1.1 이후 축산업(소 사육업, 양돈업, 양계업, 오리사육업, 낙농업, 흑염소 사육업)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(축산업 등록제 기준). 다만, 신규 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,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
3. 지원대상

- 사업내용 :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
 - *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설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,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할 경우 신축축사 환수 조치
 - 한(육)우 : 축사 및 내부기자재(급이·급수, 소독·환기시설(공기정화기, 온·습도 조절장치 등), 폐사축 처리시설
 - 낙농: 축사, 착유시설, 디지털 유량계, 냉각기, 폐사축 처리시설 등(로봇 착유시설 제외)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한우, 돼지, 닭(육용종계 포함), 오리, 젓소, 흑염소, 꿀벌, 양록의 사육시설 및 기자재 등

5.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

- 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
- 보조 30%, 융자 50%(연리 3%, 3년거치 7년상환), 자담 20%

구분	사육시설 면적당(㎡) 지원한도액 ⁽¹⁾	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	개소당 사업비	
			지원한도액 ⁽²⁾	총사업비
한(육)우	216천원/㎡	20백만원	200백만원	250백만원
낙농	185천원/㎡	20백만원	200백만원	250백만원

주1)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한도액⁽¹⁾은 보조+융자+자부담의 합산액이며,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⁽²⁾은 보조+융자의 합산액이며, 총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

주2) 낙농분야의 경우 개소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, 축사시설과 착유시설 등을 구분하여 개별 시설별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<별표 2>에 의한 시설별 지원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

- *용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
- 사업기간 : 1년차 사업(단, 모돈번식전문농장은 1년차 50%, 2년차 50% 분할 지원)
-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02 축산종합지도(HACCP) 지원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
 - 사육농가 : 축산업(소사육업)을 등록하고 한·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, 젓소(착유)의 경우 두수와 상관없이 1일 평균 산유량 1,000kg 이상인 농가
 -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보관업, 집유업
 - 사업대상 우선순위 부여 :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,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,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나 큰 영업자를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
 - 시·도는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
 - *사업대상자(사육농가)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

2. 지원대상

- 사업대상자중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 컨설팅 비용지원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아래 내용을 포함한 HACCP 컨설팅 실시
 -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
 - 사육농가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
 - 영업장(판매, 보관, 운반, 집유)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(SSOP) 작성·운용
 - 개별 농장·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·운용 지원
 - 위해요소 분석, 중요관리점 설정, 허용한계치 설정, 감시관리체계, 개선조치, 검증방법, 기록유지 등

4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지원기준 : 개소당 8백만원(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)
 -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 시까지임

03 축산자조금지원사업

1. 사업대상자

-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,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

2. 자조금의 용도

-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
- 축산업자 및 소비자, 중도매인 등과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
-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,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
- 축산물 소비촉진, 품질 및 생산성 향상,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
-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
-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. 지원형태

- 거출금의 100%범위 이내에서 지원(다만,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)

4. 거출금의 한도 및 지원조건

-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,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,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

- 축산물(우유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, 쇠고기, 오리고기, 녹용 등)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내에서 보조지원

* 다만,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「방송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의 광고(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)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. ☹

